

대전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1089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1. 4. 6.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20,083,5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83,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5. 25. C과 대출한도액 3,000만 원, 대출금 상환기일 2020. 11. 27.로 정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20. 11. 27. 대출원리금(원금 1,650만 원)을 상환하지 못했고, 2022. 3. 7. 기준 원고에게 20,083,570원 및 그 중 1,65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C과 피고의 어머니인 망 D이 2021. 1. 10. 사망하였고, 자녀인 E, C, 피고가 각 1/3 지분씩 망 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4. 6.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C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21. 4.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무렵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약 1,280만 원이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2021. 6. 29.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리고 2021. 8. 2.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8,100만 원에 매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당진시청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3 지분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무자력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자신의 행위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고가 망 D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9년에 피고가 처음 매수하여 등기까지 했다가 1997년에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서 위 부동산을 2002년경 망 D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하면서, 애초에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아니었고 C은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준 것일 뿐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으면서 망 D에게 명의신탁해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망 D을 채무자로 하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왔던 사실 등 망 D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을 뿐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 D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

피고는 C과 따로 산지 30년이 넘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 및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인 피고 스스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다른 공동상속인 E은 신용상 문제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점 등) 및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어야 한다.

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공동담보가액(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한도)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21. 8.경 8,1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위 금액 상당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약 1,280만 원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 1/3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은 약 2,273만 원 $[(8,100\text{만 원} - 1,280\text{만 원}) \times 1/3 \text{ 지분}]$ 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0,083,570원 및 이에 대한 2022. 3. 8.부터의 지연손해금 상당이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공동담보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변론종결시까지의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3,5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3,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60.3㎡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3093㎡

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3768㎡

대지권의종류 : 1.2.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6861분의 45.28 끝.

1) 청구취지에는 2021. 1. 10.로 되어 있으나, 을 제1호증(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기재에 따라
정정한다.